

안산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5. 6 .
발 의 자 : 이 창 수 의 원
외 5인

1. 제 안 이 유

- 안산시 하부행정기관인 구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킴.(안 제2조4호)
- “소속행정기관”을 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”으로, “담당관·과장급과”를 “담당관·과장과”로 수정함.(안 제2조5호)

안산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중 “소속행정기관”을 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”으로
하고, “담당관·과장급과”를 “담당관·과장과”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
하고,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.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〈신설〉</p> <p>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<u>담당관·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</u></p>	<p>제2조(범위)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</u></p> <p>5. <u>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.....</u></p> <p>.....<u>담당관·과장과</u>.....</p> <p>.....</p>

제1편 의회 안산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

안산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

[소관부서 : 의회]

안산시조례 제399호
[1991. 4. 4]

개정 1999. 5.10 조례 제83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'99. 5.10>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 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, 담당관, 과장급
3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
4.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·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

부 칙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'99. 5.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